#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6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원이・위성곤・김한규

양문석 • 한준호 • 신정훈

박지혜 • 박희승 • 이정문

김선민 · 민병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금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추가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택배서 비스사업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등		
<u>&lt;신 설&gt;</u>	제38조의2(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		
	과 금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		
	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		
	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		
	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아서는 아니		
	<u>된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12의2.</u>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추가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택배서비스사업자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